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기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676

발의연월일: 2022. 12. 5.

발 의 자:최기상·강민정·기동민

김성환 · 김영배 · 박상혁

소병철 · 신정훈 · 이동주

임호선 · 허 영 · 허종식

의원 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후보자, 후보자의 배우자,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에 한해서만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, 유권자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음.

그런데 어깨띠 등의 소품은 제작이나 활용이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, 유권자에 대해서 그 사용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.

최근 헌법재판소도 유사한 취지에서 「공직선거법」 제68조제2항 및 제255조제1항제5호 중 '제68조제2항'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 다고 결정하면서 '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나 사회통념상 적은 비용으로 제작한 물건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 는 경우 경제력의 차이로 인한 기회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 고, 표시물의 가액 등을 제한하는 수단을 사용하면 기회 불균형을 충 분히 방지할 수 있으며, 후보자 비방 금지 등의 규정이 이미 존재하므로 해당 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·제한하고 있고, 이로 인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매우 중대하다'고 판시한 바 있음(헌재 2022. 7. 21. 2017헌가4).

이에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,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규격이나 금액에 상한을 두도록하고, 규격이나 금액 범위를 벗어난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경우 현행법과 같이 형벌에 처하는 것이 아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8조제1항 등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8조제1항 중 "후보자와 그 배우자(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)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선거사무원,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"을 "이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"로, "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(上衣)· 표찰(標札)·수기(手旗)·마스코트, 그 밖의 소품"을 "어깨띠나 윗옷(上衣)· 교찰(標札)·수기(手旗)·마스코트, 그 밖의 소품(이하 "어깨띠등"이라 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이 경우 어깨띠등의 규격이나 금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.

제255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, 제261조제7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제6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규격이나 금액 범위를 벗어난 어깨 띠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제68조(어깨띠 등 소품) ① 후보 자와 그 배우자(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 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).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선 거사무원, 후보자와 함께 다니 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·성명·기호 및 소속 정당 명,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 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 마스코트, 그 밖의 소품을 붙이 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 을 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,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, 표찰·수기·마스코 트·소품, 그 밖의 표시물을 사 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
아 제68조(어깨띠 등 소품) ① 이 법 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 는 사람은 누구든지-----띠나 윗옷(上衣)·표찰(標札)·수 기(手旗)·마스코트, 그 밖의 소 품(이하 "어깨띠등"이라 한다)-어깨띠등의 규격이나 금액이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 는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 다.

개

정

<삭 제>

- ③ 제1항에 따른 어깨띠의 규 격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 로 정한다.
- 第255條(不正選擧運動罪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 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.
 - 1. ~ 4. (생략)
 - 5.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(어 깨띠의 규격을 말한다)을 위 반하여 어깨띠, 모자나 옷, 표찰·수기·마스코트·소품,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 거운동을 한 사람
 - 6. ~ 20. (생략)
 - ② ~ ⑤ (생 략)

제261조(과태료의 부과 · 징수 등)

- ① ~ ⑥ (생 략)
-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6. (생 략) <신 설>

제]	>
	제]

第255條(不正選擧運動罪) ①
1. ~ 4. (현행과 같음)
<삭 제>
6. ~ 20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26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
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
<u>,</u>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제6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

	여 규격이나 금액 범위를 벗
	어난 어깨띠등을 사용하여
	선거운동을 한 사람
⑧ ~ ⑫ (생 략)	⑧ ~ ⑩ (현행과 같음)